|  |
| --- |
|  **사이트 구축** **계 약 조 건** |

**2009. 3. 2**

 **(주)**

**(주)**

**목 차**

 **- 일 반 조 건**

 **- 특 수 조 건**

**일 반 조 건**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 (이하 “갑”)과 ㈜ (이하 “을”)간에 ‘ 사이트’(이하 ‘사이트’) 개발계약을 위한 일반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정리)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트”라 함은 사용자가 보유한 파일을 업로드 하여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휴대영상플레이어를 지원하는 파일변환과 저장공간의 제공, 저장된 파일의 다운로드 및 모바일 스트리밍을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및 S/W를 의미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서비스’이용에 대해 ‘사이트’와의 약정을 통하여 사용허락을 얻은 자를 말한다.
3. “서비스”라 함은 “갑”의 ‘사이트’에서 사용자 또는 운영자가 업로드한 동영상, 이미지, 시나리오 등을 유.무선인터넷 등에서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4. “계약체결일”이란 “갑”과 “을”이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마친 날을 말한다.
5. “선금”이란 계약체결 후 “을”이 “갑”으로부터 받게 되는 계약금의 일정부분의 금액을 말한다.
6. “완료급”이란 최종납품이 완료되고 검수를 마친 경우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지체상금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되는 용역 대가를 말한다.

제3조(신의성실) “갑”과 “을”은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최대한 협조 하도록 한다.

**제2장 계약의 범위**

제4조(계약내용) “갑”과 “을”이 체결하는 계약의 범위는 “갑”의 필요요건에 따라 “을”이 개발 구축하여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및 S/W’의 개발 및 유지보수에 관한 것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특수조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제5조(사이트 개발의무) “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이트’의 최초 서비스가 개시된 날까지 ‘사이트’의 개발/갱신/하자보수 등을 책임진다.

제6조(하자보수 및 유지보수의무)

1. “을”은 '사이트’의 완료 검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즉시 조치한다.
2. “을”은 “갑”의 유지보수요구 통보 후 2일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계 약**

제7조(계약문서) 본 계약의 문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① 표준용역계약서

 ② 계약일반조건

 ③ 계약특수조건

 ④ 과업내용서

제8조(계약문서의 내용)

 ① ‘표준용역계약서’란 “갑”의 양식에 의거한 계약서를 말하며, 계약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법인 사용인감계 1부
4. 법인 인감증명 1부

 ② ‘계약일반조건’이란 “갑”의 양식으로서, 계약의 일반조건 및 계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③ ‘계약특수조건’이란 “갑”의 양식으로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일정, 제공방법 등을 명시한 자료를 말한다.

 ④ ‘과업내용서’란 “갑”이 제공받을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명시한 것을 말한다.

제9조(계약이행 보증금 및 하자보수 이행보증금)

1. “을”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서에 정한 계약이행 보증금(계약금액의 10%)과 개발완료 보고서 제출시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 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5%)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 등은 현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은행의 지급보증서
3.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장 유가증권
4. “갑”을 피보험자로 한 보증금액이상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 보험증권
5. 국채증권
6. “갑”이 지정하는 은행의 무기명 예금증서

 ②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10조(대가의 지급)

1. “갑”의 “을”에 대한 용역대가의 지급금액은 “갑”과 “을”의 계약서상 계약금액으로 한다.
2. 대가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지급한다.
3. 선 금: 본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50%를 7일 이내에 지급
4. 완 료 급:“갑”의 완료검수 후 “을”의 청구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지급
5. “갑”은 본 용역에 대한 대가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1조(지체상금)

 ① “을”은 계약서가 정하는 기간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지체일수에 대해 당해년도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대금정산시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② 천재지변, 전쟁, 기타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12조(지적소유권)

1. “을”이 계약서에 의하여 “갑”에게 제공하는 ‘사이트’는 제3자의 저작권 기타 지적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만일 “갑”이 “을”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이트’를 배포하는 행위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밝혀지거나 제3자가 “갑”에 대하여 권리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을”은 그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소송비용(변호사비용포함)과 소송외의 비용 및 손해배상책임 기타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갑”을 면책시키고 보상할 책임이 있다.
2. “을”이 “갑”에게 납품한 모든 개발용역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13조(손해배상) “갑”과“을”은 본 계약을 통해 상호 합의사항을 위반함으로 인해 서로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법적책임 및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용역수행**

제14조(용역범위) 본 계약을 통하여 “을”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 기능
* 사이트 기능 : 회원가입, 결재, 이벤트참여, 고객센터, 쪽지관리, 마이페이지, 마이컨텐츠함, 디바이스광장, 충전샵, 파일전송, 디바이스 파일변환 및 관련 인터페이스, 파일검색 등 사용자 웹서비스 기능 구현
* 업로드/다운로드 기능 : 마이컨텐츠함/디바이스 파일 광장 등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기능 제공
1. 관리자 기능
* 사이트 기능 : 회원관리, 메뉴관리, 쪽지관리, 파일관리, 결제관리, 이벤트 관리, 통계관리, 시스템 관리, 금칙어 설정, 검색 관리 등 관리기능 구현
* 업로드/다운로드 기능 : 사용자에 따른 웹하드(스토리지) 관리 및 백업 사용량 조회, 스토리지, 다운로드 용량제한 등의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관리기능 구현

제15조(용역수행방식) 용역은 “갑”이 정한 개발절차 및 방식에 따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을”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개발계획서(세부추진일정표 포함)를 “갑”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갑”은 관계요원(“갑”의 담당자가 별도 지정 통보)을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을”의 업무진행 상황 및 내용설명 등을 “갑”이 수시로 요구하는 경우 “을”은 신속히 응하여야 한다.

④“을”은 '사이트’개발 시 “갑”의 개발방법론(코딩규칙 등)에 따라 개 발하여야 한다.

제16조(인력관리)

 ① “을”은 용역에 참여시키는 인원은 “갑”에게 제출한 개발계획서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참여인력의 교체 등 변동이 있을 경우 “을”은 사전에 “갑”에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 제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얻은 후 참여시켜야 한다.

1. 인원 변경 요청서
2. 경력증명서

 ② “갑”은 위 참여인력이 용역수행상 부적당하거나 자격미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하자보수)

 ① 하자의 범위는 프로그램의 불량 및 장애, 맞춤법 상이, 확인작업의 결행, 기타 일반적 하자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며 하자보수에 따른 제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1. “을”은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갑”의 완료 검수일로부터 12개월간 하자보수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제공)

 ① “갑”과 “을”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료를 상호 요청할 수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을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을”이 용역 수행기간 내에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하자보수의 불이행, 자료제공의 불성실, 신의성실의 위배, 기술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을”의 법적 소멸이나, “을”이 “갑”에게 제공한 자료 등으로 인해 소송 등이 발생한 경우
5. 천재지변, 전쟁, 대형 통신사고 등으로 인한 용역제공의 지연

 ② “갑” 또는 “을”이 위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에게 해지 희망 1개월 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분쟁조정)

 ① 본 계약조건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계약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관한 분쟁은 최대한 쌍방 합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갑” 의 소재지 또는 “갑”이 지정하는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1조(계약해석) 본 계약의 해석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제5장 부칙**

제22조(추가 또는 특약사항) 본 계약서에서 충분히 표현되지 못한 사항이나,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별도의 계약특수조건에서 명시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상호 별도 협의를 통해 첨부할 수 있다.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연일커뮤니케이션(이하 “갑”)와 ㈜아이비투글로벌(이하 “을”)간의 온라인 서비스 솔루션 개발계약에 있어 용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명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역할규정) 본 계약을 통하여 개발하는 ‘사이트’는 “을”이 개발하는 것이며,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을”은 과업내용서의 기준에 부합하는 기능을 가진 ‘사이트’를 개발하며, ‘사이트'개발에 필요한 상세내역은 과업내용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개발내역) 사이트 개발 용역에 대한 전체 납품내역, 구체적인 일정 및 납품계획은 별첨으로 첨부한 과업내용서 및 “을”의 ‘개발계획서’로 갈음하고 기 제출한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 한다.

제 4조(개발환경구축) “을”은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개발장비 등을 자체부담으로 개발 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제5조(진도보고 및 용역보고서 제출)

|  |  |  |
| --- | --- | --- |
| **순서** | **단계** | **제출 일시** |
| 1 | 개발표준 | 계약후 7일 이내 |
| 2 | 분석단계 | 분석완료 후 7일 이내 |
| 3 | 설계단계 | 설계완료 후 7일 이내 |
| 4 | 구현단계 | 구현완료 후 7일 이내 |
| 5 | 단위시험 | 구현완료 후 3일 이내 |
| 6 | 통합시험 | 단위시험 완료 후 3일 이내 |
| 7 | 개발완료 | 용역 완료 시 까지 |

제6조(지적소유권 확보)

1. 사이트 개발을 위해 “을”이 “갑”에게 계획서에 따라 납품하게 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납품시 지적소유권 분쟁방지를 위해 회사가 인정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을”이 제시하는 지적소유권과 관련한 각종 문서들을 “갑”은 신뢰하고 인정해 주어야 하며, 향후 관련 문서 등의 해석과 관련하여 각종 분쟁이 발생함으로 인해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계약일반조건 제12조를 적용하도록 한다.

제7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갑”은 “을”의 용역 수행내용 및 개발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을”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전 최고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 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되며 “을”이 “갑”에게 제공한 모든 정보와 S/W등은 “갑”의 소유로 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 없이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갑”은 “을”에게 해제 또는 해지 전까지 본 용역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제8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 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쌍방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을”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자료 및 이를 통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복사, 판매 또는 공개할 수 없다.

제10조(보고서 양식) “을”이 “갑”에게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양식은 “갑”이 별도 지정하는 양식에 의거한다.

|  |  |
| --- | --- |
| ㈜ 대표이사 사장 (인)  | ㈜ 대표이사 사장 (인)  |